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44,600,000	22,338,000
일반회계		656,440,000	19,693,200
특별회계		88,160,000	2,644,800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56,400,000	1,692,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2,600,000	978,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800,000	714,000
	기타특별회계	31,760,000	952,800
	수질개선특별회계	5,009,000	150,2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50,000	73,5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314,000	39,42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30,000	81,9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6,000	9,18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758,000	52,740
	치수사업특별회계	8,627,000	258,810
	기반시설특별회계	575,000	17,25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741,000	52,230
	주차장특별회계	7,250,000	217,5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495,08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